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누락되는 지원사항을 보완하고, 현행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기존 사업자 신뢰 보호 등을 위해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를 인용하는 다른 법률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을 인용하도록 다른 법률의 개정을 신설함.

수정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기존사업자 보호 및 입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지’의 정의를 ‘연료전지등’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6호).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원유지 및 입법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확대함(안 제18조).

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역할과 중복 방지를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범위를 수정함(안 제25조의20).

라. 안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이관에 따라 설비인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함(제57조제1호의4 신설).

마. 기존 사업자 신뢰보호 등을 위해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을 인용하도록 ‘다른 법률의 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8조).

사.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비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법률이나 조항에 법률 개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신설함(안 부칙 제9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제2조제1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수소전문기업 또는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부·사용·수익”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사용·수익(이하 “임대”라 한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

안 제25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25조의10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을 “설비인증”이라 한다.

안 제25조의1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25조의1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의 실시기관”을 “이용·보급 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25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2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안 제25조의18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안 제25조의19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안 제25조의20의 제목 “(사업의 실시기관)”을 “(이용·보급 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안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안 부칙을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제1조(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 및 부품은 제2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5조의1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

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자는 제25조의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시행하던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제25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5조의19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사후관리의 실시 및 실적 보고 또는 사후관리 시행결과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5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36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⑥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⑧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조제5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운영 사업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으로 한다.

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제7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같은 항 후단 중“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로 한다.

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⑱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으로 한다.

⑲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⑳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㉑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㉒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6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㉓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

소에너지”로 한다.

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㉖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㉗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으로 한다.

㉘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㉙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한다.

㉚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㉛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㉜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㉝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수소----------.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7. ~ 1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 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 가스터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신 설>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 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 1. ~ 13. (개정안과 같음)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 6. (개정안과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같음) 7. --------**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수소전문기업 또는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부·사용·수익----------.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사용·수익(이하 "임대"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

		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

		상을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현행과 같음)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 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 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

	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장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	

	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	----------. 1. ~ 6. (개정안과 같음)

	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신 설>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개정안과 같음)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설비인증----------.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③ (개정안과 같음)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제25조의20에 따른 **사업의 실시기관**	1. ----------**이용·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는 단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14(보급사업)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개정안과 같음)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 3. (개정안과 같음)

	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신 설>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

	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9(수소에너	제25조의19(수소에너

	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	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신 설>	제25조의20(**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	제25조의20(**이용·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제7조의3제1항**----------

	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
	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2. (개정안과 같음)
	3. 제25조의12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삭 제>
	4.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3. (개정안 제4호와 같음)
	5. 제25조의15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삭 제>
	6.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개정안 제6호와 같음)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5. (개정안 제7호와 같음)

	8. 제28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관리	<삭 제>
	9.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삭 제>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생 략)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현행과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개정안

	같음)	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한 자는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 및 부품은 제2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1

		조에 따라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5조의1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자는 제25조의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시행하던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제25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5조의19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사후 관리의 실시 및 실적 보고 또는 사후 관리 시행결과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5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36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⑥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수소경

		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한다. ⑧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조제5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경제 육

		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운영 사업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으로 한다. 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제7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

		범사업·보급사업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

		다. 제44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같은 항 후단 중“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로 한다. 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

		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⑱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으로 한다. ⑲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

		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 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⑳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

		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㉑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㉒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6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㉓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 두목부터 부목까지를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㉖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

		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㉗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으로 한다. ㉘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㉙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한다. ㉚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㉛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

		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㉜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㉝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07

발의연월일 : 2024. 8. 1.

발 의 자 : 김성환・김정호・허성무 윤종오・백승아・박지혜 이소영・서왕진・황정아 최민희・허 영・김기표 차지호・복기왕・위성곤 오세희・전현희・강경숙 김원이・김동아・권향엽 김 윤・정진욱・이재관 남인순・김영배・박희승 정태호・양부남・윤건영 문금주・김영환・박정현 이광희・김남근・윤준병 이재강・염태영・송재봉 박범계・문대림・임미애 박홍근・임광현・안호영 김태년・추미애・김용만 황명선・이기헌 의원 (5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3항 신설).

파.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57조1호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신에너지 기존사업자 보호 및 입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지’의 정의를 ‘연료전지등’으로 수정함(제2조제6호).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원 유지 및 입법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확대함(안 제18조).

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역할과 중복 방지를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범위를 수정함(안 제25조의20).

라. 안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이관에 따라 설비인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함(제57조제1호의4 신설).

마. 기존 사업자 신뢰보호 등을 위해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을 인용하도록 ‘다른 법률의 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8조).

사.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비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법률이나 조항에 법률 개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신설함(안 부칙 제9조).

법률 제 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사용·수익(이하 “임대”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

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11(보험·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

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

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0(이용·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6.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진흥전담기관”을 “공단, 진흥전담기관”으로 한다.

제57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 및 부품은 제2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5조의1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자는 제25조의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시행하던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제25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5조의19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사후관리의 실시 및 실적 보고 또는 사후관리 시행결과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5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36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⑥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한다.

⑧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조제5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

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운영 사업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으로 한다.

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제7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보급사업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

너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같은 항 후단 중“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로 한다.

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⑱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으로 한다.

⑲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⑳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㉑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㉒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6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㉓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㉖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㉗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으로 한다.

㉘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㉙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한다.

㉚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㉛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㉜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㉝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현행과 같음)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생 략)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신 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사용·수익(이하 “임대”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단서 신설>	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이

<신 설>	용·보급 촉진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

	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

	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 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

	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

	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신 설>	제25조의20(이용·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6.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 진흥전담기관----------

할 수 있다.	----------.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